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609 발의연월일: 2023. 3. 14.

발 의 자:조경태・엄태영・서병수

金炳旭・태영호・이 용

정동만 • 백종헌 • 전봉민

정경희 · 임이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의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·폭행 현황에 따르면,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교사 상해·폭행이 2021학년도에는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, 출석정지,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·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에 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·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0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	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
한 조치 등) ① ~ ⑨ (생 략)	한 조치 등) ① ~ ⑨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
	장은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5
	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
	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제1항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
	<u>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·관리</u>
	하여야 한다.